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반덤핑조사 예비조사기간 연장 통지

1. 「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(무역위원회공고 제2026-7호, 2026.4.7.)」 관련입니다.

2.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사 건에 대한 예비조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2개월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예비조사기간		연장사유
당 초	변경 후	국내생산자, 수입자, 수요자,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
2026.4.7. ~ 2026.7.6. (3개월)	2026.4.7. ~ 2026.9.7.* (5개월)	

* 관세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. 끝.

무 역 위 원 회

수신자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,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, 조사대상공급자

공업사무관 이선덕 과장 전결 2026. 7. 1. 김영윤
협조자
시행 덤핑조사지원과-466 (2026. 7. 1.) 접수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https://www.motir.go.kr
전화번호 044-203-3865 팩스번호 044-203-4813 / Leesd@motir.go.kr / 비공개(5)